

주요국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 규정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ibrary Exceptions in Copyright Laws in Major Countries

정경희 (Kyounghee Joung)**

초 록

본 연구는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예외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 보존을 위한 복제,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복제 등이 대표적인 예외규정이었으나 그 세부 조건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서 미공표저작물 및 구하기 힘든 저작물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이용자용 복제의 분량 재조정,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물을 전송, 자체 보존용 복제가 가능한 조건 마련, 상호대차 근거규정 마련, 디지털화 대상범위 제한과 이용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provisions for library exceptions in copyright law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provisio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provisions for library exceptions in several countries' copyright law including Korea, Japan, UK, Australia and USA. This study found that the most common issues in library exception provisions are providing reproduction for users, reproduction for preservation, reproduction for interlibrary loan and digitization of library collections but the conditions for each issue are quite different. The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library exceptions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are as follows: changing the amount of reproduction of unpublished works, of works which cannot be obtained at a fair price and of periodicals for users, the transmitting digital reproduction to the user under limited conditions, preparing conditions for reproduction for preservation in libraries, preparing the applicable provisions for reproductions for interlibrary loans and for the limitation of works to be digitized and extending their use at the same time.

키워드: 저작권법, 도서관 예외규정, 복제, 공중송신, 상호대차, 디지털화,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미국
copyright law, library exceptions, reproduction, public transmission,
interlibrary loan, Korea, Japan, UK, Australia, USA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수행하였음.

** 한성대학교 응용인문학부 부교수(khjoung@hansung.ac.kr)

■ 논문접수일자: 2017년 2월 27일 ■ 최초심사일자: 2017년 3월 17일 ■ 게재확정일자: 2017년 3월 20일
■ 정보관리학회지, 34(1), 263-289, 2017. [<http://dx.doi.org/10.3743/KOSIM.2017.34.1.263>]

1. 서론

인간이 정보와 지식에 접근하여 이를 각자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나 존중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저작권법은 이 가치를 인정하여 도서관이 이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의 내용은 미디어와 정보기술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보존하거나 서비스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이용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 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도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2000년과 2003년 대규모 개정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거의 15년 넘게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단, 국립중앙도서관의 웹자료 복제 조항 도입은 제외). 이와 달리 최근 세계 각국은 중요한 개정을 하였거나 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은 2014년 저작권법의 '도서관과 기록관' 섹션을 전면 개정하여 이용대상 범위를 확장하거나 상호대차의 절차를 쉽게 하였고(Cornish, 2015) 동시에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호주에서는 2006년 개정된 도서관을 위한 공정이용 규정이 보다 유연하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2013).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요한 몇 개국의 도서관 예외 규정을 분석하여 이 규정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식별함으로써 각국의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국외의 규정 중에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요소들을 도출한 후 우리나라 규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상 도서관 예외규정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영국은 비교적 최근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는 점, 호주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물을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매우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일본은 우리나라가 거의 그대로 도입한 도서관 예외규정이었다는 점, 미국은 개정된 지는 오래되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국가의 도서관 예외규정을 주로 이용자를 위한 복제 및 전송 규정, 자관 및 다른 도서관을 위한 보존과 대체를 위한 복제 규정, 상호대차를 위한 원문복제 및 전송 규정,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 및 이용 규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의 근거와 도입시기

2.1 도서관 기능과 도서관 예외규정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방식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예외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에게 소장자료에 대한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도서관이 보존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 절판 등의 자료를 복제하여 다른 도서관에 제공하는 것, 도서관 소장자료를 디지털로 복제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등에 대하여 특별한 조건 하에서 예외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규정하는 방법이나 표현은 나라마다 서로 다르다. 예컨대 영국저작권법은 제3장 '저작물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 중 '도서관 및 기록관'이라는 제목 하에, 미국저작권법은 제1장 '저작권의 보호대상과 범위' 중 제108조에, 호주저작권법은 제3편 '독창적인 어문, 연극, 음악 및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중 제5장 '도서관 및 기록관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복제'에, 일본 저작권법은 제5관 '저작권의 제한' 중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에서 도서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그 내용이 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도서관 장서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을 제작하고 제공하는 것, 보존을 위하여 복제하는 것, 특별한 경우에 대체자료를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이유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기인한다. 도서관은 인간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류가 만들어낸 사회제도이다. 물론 이때의 도서관이란 주로 공공에게 공개된 도서관이다. 인간이 원하는 것을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것, 이를 통하여 지적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누구에게나 허용되어야 할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다.

도서관은 이러한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읽을거리와 정보자료를 장서로 갖추고 이용자가 도서관에 방문하여 읽을 수 있게 하거나 대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한다. 또한 무엇인가를 조사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있는 이용자들에게는 그들이 필요한 자료를 복사물로 제공하거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이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복제본을 제작한다. 또한 도서관이 서로 협력하여 상호간에 구하기 어려운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도 한다. 이러한 도서관의 임무 중 상당수가 저작권법에 규정된 복제와 관련된 행위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각국의 저작권법에 도서관 예외규정이 마련된 것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였다. 영국은 공정이용(fair dealing) 조항과 6개의 저작권 제한 조항을 도입하였던 1911년 저작권법에는 도서관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다가 1956년 새롭게 제정한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도입하였다. 호주는 1901년 영국의 자치령으로서 호주연방이 발족하였으나 계속 1911년 영국저작권법을 적용해오다가 1968년 호주저작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때 도서관 예외 조항을 도입하였다. 일본의 경우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적이용, 교육목적 이용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입하였던 1971년도에 도서관 예외 조항을 도입하였다. 미국은 1935년 국립도서출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ook Publishers)와 미국학회연합회 연구자료에 관한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Materials for Research of the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가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이라고 알려진 양자간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 협약에서 저작물 복제와 관련하여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였다(The Section 108 Study Group, 2008, p. 15). 이후 1976년 저작권법 개정시 도서관 예외 규정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1986년 저작권법에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규정을 일본과 거의 동일하게 제정한 후 1987년부터 시행하였다.

2.2 선행연구

각국의 저작권법은 서로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고 저작권자에게 인정하는 권리와 그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과 범위도 매우 다양하다. 도서관 예외규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각국의 규정을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위임을 받아 도서관의 저작권 문제 전문가인 Crews가 WIPO 회원국을 대상으로 도서관 예외규정을 2008년(Crews, 2008), 2014년, 2015년(Crews, 2015)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는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중요하다. 가장 최근인 2015년 자료집(Crews, 2015)에 따르면 WIPO 회원국 188개국 중 도서관 예외규정이 전혀 없는 경우는 32개국이었다. 각국의 예외 규정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주로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복제, 보존을 위한 복제, 손실을 대체하기 위한 복제 규정이었고, 상호대차 및 원문제공 규정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또한 이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기술과 연구행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각국의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있으며, 특히 EU 회원국들에서 도서관내 전송을 위한 디지털 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이 도입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도서관 예외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에 의회도서관장과 저작권청의 지원으로 예외 규정 적용대상 기관 확대, 디지털 자료에 대한 보존용 복제 허용 등을 제안하는 도서관 예외 규정을 개정

하기 위한 연구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하였다(The Section 108 Study Group, 2008). 또한 미국 저작권청이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개정해야 할 중요한 조항의 하나가 108조라는 언급을 한 이후 도서관이 보존 및 대체용 복제를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디지털 복제물을 도서관 밖으로 배포하는 것, 대량디지털화를 위하여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Brown, 2013). 더 나아가 IFLA는 상호대차나 디지털형태의 문헌제공, 고아저작물 이용 등 도서관 예외규정에 대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규약을 WIPO에 제출하기도 하였다(IFLA, 2013).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 예외규정을 비교분석한 연구와 국내법 개정을 위한 연구들이 있다. 윤희윤(2010)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의 저작권법에서 이용자를 위한 복제와 보존용 복제 및 상호대차 용 복제 등에 대한 도서관 예외규정을 비교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국외의 도서관 예외규정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도서관 예외규정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것은 하였으나 국내 규정이 갖는 문제점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하여 김종철(2008)의 연구는 국외 규정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보상금 징수와 분배의 문제해결, 상호대차를 위한 규정 신설, 디지털자료의 전송범위 확대 등 국내의 도서관 예외규정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본 연구는 각국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을 비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윤희윤(2010)의 연구와 유사하지만 그 비교대상 국가가 다르고 비교를 통하여 국내 규정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도서관 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김종철(2008)의 연구와 유사하지만, 그 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르다.

3. 각국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 규정 내용 분석

3.1 한국

현행 저작권법¹⁾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은 1~8항에 걸쳐 이용자를 위한 복제(동조 1항 1호), 보존을 위한 복제(동조 1항 2~3호, 4항),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 및 이용(동조 2~5항, 7항), 국가대표도서관의 온라인자료 수집(동조 8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1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이다(저작권법시행령 제12조). 그러나 전문도서관 중에서 영리목적의 법인이나 단체에서 설립한 것으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도서관은 제외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도서 등의 보존 및 대출 또는 공중에 이용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시설도 제31조 적용대상 기관이다. 요컨대,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1조의 적용대상은 공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 혹은 공공에게 개방되어 있는 도서관이며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비영리 주체가 설립하여 도서 등을 보존하거나 공중에

게 서비스하는 기관이다.

3.1.1 이용자를 위한 복제

이용자가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요구하였을 때 도서관은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을 복제하여 1인에게 1부 제공할 수 있다(제31조 1항 1호). 공표된 도서라는 단서가 있으나 저작자 미공표 저작물을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제11조 5항)에 따라 도서관에 소장된 상당수의 저작물이 제31조 1항의 적용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 ‘도서 등’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제31조 본문에 “도서, 문서, 기록 그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라고 한 것으로 보아 유형을 불문하고 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자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복제대상이 되는 자료가 디지털 형태인 경우 제31조 5항과 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3.1.2 보존용 복제

보존용 복제는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첫째는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고(제31조 1항 2호), 둘째는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른 경우이다(동조 동항 3호).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의 경우 특별한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른 복제인 경우 절판이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구하기 어려운 도서이어야만 복제할 수 있다. 또한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의 경우 디지털 복제도 가능하나

1) 법률 제14432호, 2016.12.20.

(단 해당 자료가 디지털로 판매되지 않을 경우),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른 복제인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보존용 복제는 앞서의 이용자를 위한 복제와는 달리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복제분량 및 부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미공표저작물도 보존용 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1.3 디지털 복제 및 전송

도서관 등은 이용자의 열람을 위해 보관된 도서 등을 디지털로 복제할 수 있다. 이용자 열람을 위한 디지털 복제는 자관 이용자와 타관 이용자 모두를 위하여 가능하나 조건은 서로 다르다. 자관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복제의 경우 자관 내에서 동시에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 수가 그 도서관에 보관된 자료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제31조 2항). 타관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복제 및 전송은 일부 또는 전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제31조 3항). 두 경우 모두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는 자료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제31조 4항). 또한 이 두 경우 모두 이용자를 위한 복제의 경우와 달리 이용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거나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다만, 타 도서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저작재산권자인 비매용 자료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면제된다.

3.1.4 온라인자료 수집

국가대표도서관이자 '도서관법'에 의한 납본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을 목적으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제31조 8항).

3.2 일본

일본 저작권법²⁾의 도서관 예외규정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규정되어 있다. 제31조 1항은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1조 1항과 마찬가지로 이 항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 1호에서 이용자 요구에 따른 복제, 2호에서 보존용 복제, 3호에서 다른 도서관을 위한 복제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일본 저작권법 제31조 1항 및 그 시행령 제1조의 3에 따르면 이 조의 적용대상은 국립국회도서관, 공중에게 자료를 서비스하기 위하여 설립한 도서관과(제31조 1항) 그 외의 시설로서 지역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교육기관의 도서관, 도서 등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이나 연구소 또는 국가나 공익단체가 설립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다(저작권법시행령 제1조의 3). 단, 그 외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서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3.2.1 이용자 요구에 따른 복제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조사나 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

2) 著作権法, 법률 제46호(2015년 6월 24일 개정)

부분을 복제하여 1인에게 1부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정기간행물 기사는 전부 복제가 가능하다(제31조 1항). 저작권법에는 일부분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일본 저작권연구정보센터(Copyright Research & Information Center)는 저작물의 50% 이하가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발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정기간행물이란 일반적으로 상용 루트를 통하여 구입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월간인 경우 발행 후 1개월 경과시 이전 달 호는 이미 출판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이 된다. 그러나 연간의 경우 발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1년이 필요하므로 일본복제권센터(Japan Reproduction Rights Center)와 대학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University Libraries)는 상호협약을 맺어 1년에 1회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출판 후 3개월이 지나면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개별 기사의 전부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³⁾

3.2.2 보존용 복제

도서관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할 수 있다(제31조 2항). 이 경우는 일부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복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특별한 요건도 복제의 방식 예컨대 디지털 복제의 금지 등에 대한 조건도 없다.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른 도서관이 요구할 경우, 절판 등 이에 준하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입수가 어려운 자료를 복제하여 다른 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다(제31조 3항). 이 경우 역시 복제의 분량이나 복제부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또한 디지털 형태의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조건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도서관에 따른 복제물 제공이 보존용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반면 일본은 그 용도에 대한 조건이 없다.

3.2.3 디지털 복제 및 전송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은 국립국회도서관이다. 우선, 국립국회도서관은 소장된 자료의 멸실, 손상, 오손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원본 대신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제31조 2항). 또한 국회도서관은 전자적 방식으로 제작된 복제물 중 절판 또는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다른 도서관으로 전송할 수 있고 전송된 저작물의 일부분 복제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31조 3항). 다만 이러한 이용은 도서관의 비영리 목적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 요구에 따라 조사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1인에게 1부, 일부분만을 제공해야 한다.

3.3 영국

영국은 2014년 6월 1일 발효된 '저작권과 공연권(연구, 교육, 도서관, 기록관) 규정 2014'⁴⁾와 같은 해 10월 29일 발효된 '저작권과 공연권(고아저작물에 대한 특정의 허용된 이용) 규정 2014'⁵⁾를 통하여 기존 저작권법의 '도서관과

3) CRIC. Case Study3 Library & Copyright. <<http://www.cric.or.jp/english/qa/cs03.html>>

4) The Copyright and Rights in Performances (Research, Education, Libraries and Archives) Regulations 2014(2014 No.1372).

기록관' 섹션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 결과 40B '도서관과 교육시설 등: 전용터미널을 통한 전송', 42A '사서에 의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1부 복제', 43A '40A에서 43: 해석' 등을 기존 저작권법에 추가하였고, 기존의 37~40은 삭제하였다. 또한 '도서관과 기록관' 섹션 바로 다음에 '고아저작물'이라는 섹션을 두고 44B '고아저작물에 대한 허용된 이용'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으로 인하여 도서관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자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CLIP, 2014). '도서관과 기록관'과 '고아저작물' 섹션의 전체 조항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⁶⁾

<도서관과 기록관>

- 40A 사서 또는 기록관에 의한 복제물의 대출
- 40B 도서관과 교육시설 등: 전용터미널을 통한 전송
- 41 사서에 의한 복제: 다른 도서관에 1부 복제물 제공
- 42 사서 등에 의한 복제: 저작물의 대체 복제물
- 42A 사서에 의한 복제: 발행저작물의 1부 복제
- 43 사서 또는 아키비스트에 의한 복제: 미발행저작물의 1부 복제
- 43A 40A~43 해석
- 44 수출의 목적용 저작물의 복제
- 44A 법적 납본도서관

<고아저작물>

- 44B 고아저작물에 대한 허용된 이용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혹은 교육기관의 도서관이다. 또한 도서관이나 기록관 등과 관련하여 영리 목적 활동이란 영리를 위하여 설립되었거나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것 또는 영리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활동하는 주체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3A).

3.3.1 이용자를 위한 복제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은 발행저작물과 미발행저작물로 구분하여 각각 정하고 있다. 우선 발행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용 복제물 제공을 정하고 있는 42(A)를 살펴보면,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의 사서는 정기간행물 1개호에서 1개의 기사에 대한 1부 복제물과 발행저작물의 합리적 부분에 대한 1부 복제물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42A(1)).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되, 그 이용자는 자신의 이름, 전에 동일한 복제물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선언, 비영리 목적의 조사 또는 개인연구용이라는 것을 밝히는 서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는 사서가 그 요청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42A(2),(3)). 또한 복제물을 제공하는데 대한 요금을 부과할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복제물 제작에 드는 비용에 준하여 산정되어야 한다(42A(4)). 만일 어떤 계약조건이 42(A)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경우 그 조건은 강제집행할 수 없다(42A(6)).

5) The Copyright and Rights in Performances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Regulations 2014(2014 No. 2861).

6)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48 Retrieved from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8/48/part/I/chapter/III/crossheading/libraries-and-archives>

미발행저작물은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전체 또는 일부분의 1부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43(1)). 다만, 위의 발행자료에 대한 복제요청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면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이와 같은 복제물 제공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할 경우 그 금액은 그 복제물 제작에 드는 비용을 참고하여 산정해야 한다(43(2),(4)). 또한 해당 자료는 도서관에 기탁되기 전에 발행되거나 공중에 전송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저작권 소유자가 복제를 금지하지 않았어야 한다(43). 발행저작물이든 미발행저작물이든 이용자를 위한 1부 복제물 제공에서 복제방법에 대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디지털 형태를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복제물 제작도 가능하다(Crews, 2015).

3.3.2 보존용 복제

도서관 사서는 도서관의 영구적인 장서에 있는 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가능하다. 첫째는 자관의 장서에 있는 자료를 보존할 목적으로(42(1)(a)), 둘째는 다른 도서관의 영구적인 장서에 있는 자료가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이다. 즉, 자관의 보존용 복제와 다른 도서관을 위한 보존용 복제물 제공이 모두 가능하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42(2)). 첫째는 복제대상이 되는 자료가 주로 도서관 구내의 참고용 장서이거나, 둘째는 그 자료가 공중이 접근할 수 없는 장서이거나 다른 도서관에만 대출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조건은 이용자의 일반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가 아니라 보존용 복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보존용 복제를 위해서는 해당 자료의 대체본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

만 가능하며(42(3)), 다른 도서관을 위한 대체용 복제물 제공은 비영리 목적의 도서관에게만 가능하다. 이용자를 위한 복제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존용 복제에 대해서도 이를 제한하는 계약조건이 있더라도 그 조건을 강제집행할 수 없다(42(7)).

복제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을 포함하여 영화, 방송, 음반, 미술 저작물, 사진 등이 포함되며 발행 혹은 미발행 저작물에 대한 조건은 없다. 또한 보존에 필요하면 몇 번이라도 복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1부 복제로는 긴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1부 복제만 허용하고, 미술저작물이나 음반이 포함되지 않았고, 포맷변경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개정을 통하여 보존용 복제 대상이 확장되었다(Pedley, 2015, p. 55). 또한 대체용 복제의 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디지털 복제물 제작도 가능하다.

3.3.3 도서관 상호간 복제

도서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발행저작물 전체 혹은 일부분을 1부 복제하여 다른 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서가 이 복제물을 만들 당시에 복제물 제작에 대한 허락을 할 자격을 갖춘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았거나 합리적 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런데 정기간행물의 기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확인 절차가 필요치 않다(41). 왜냐하면 정기간행물의 경우 상호대차를 위한 원문복사가 주로 최신 자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거의 모든 자료가 복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 예외규정은 도서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원문복사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4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이 있을 경우 그 조건은 강제집행할 수 없다(41(5)). 다른 도서관에 전달하는 복제물의 형식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이를 전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3.3.4 디지털 복제 및 전송

도서관은 복제물을 제작하여 관내에 있는 전용터미널을 사용하여 공중의 개별 구성원에게 전송할 수 있다. 단, 해당 저작물이 그 기관에 합법적으로 입수된 것이어야 하고, 조사나 개인의 연구목적에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구매나 이용허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40B). 이 규정에 따라 도서관은 소장한 책, 너무 오래되어 전시하기가 어려운 원고, 새로 디지털화한 음반 등을 조사나 개인 연구를 수행하려는 사람들에게 관내의 지정된 터미널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IPO, 2014).

3.3.5 기타

‘법적 납본도서관법 2003’에 따른 영국의 납본도서관⁷⁾은 인터넷상에 있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44A). 또한 도서관이나 기록관은 문화 및 역사적으로 중요한 특정 자료를 수출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자료를 도서관이나 기록관이 아닌 곳에서는 제작할 수 없을 경우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44). 또한 영국 저작권법

은 문학, 극, 음악, 영화 등의 저작물에 대한 공공대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18A)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도서관이나 기록관에서의 대출은 예외로 하고 있다(40A).

3.3.6 고아저작물의 디지털 복제 및 전송

고아저작물에 대한 특정의 이용에 대해서는 도서관 예외규정 다음 섹션에서 정하고 있다. 이 섹션은 44B 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4B는 적합한 주체가 고아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만 밝히고 있고, 그 외의 상세사항은 스케줄 ZA1에 정하고 있다. ZA1에 따르면 고아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주체는 공중에게 개방된 도서관, 기록관, 영화나 오디오 문화유산기관, 공영방송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권리자를 찾으려는 성실한 노력의 요건을 수행한 후에 그 기관에 소장된 장서를 디지털화하여 공중에게 전송할 수 있다.

3.4 호주

호주저작권법⁸⁾은 제5부 ‘도서관 및 기록관에서 저작물의 복제’라는 제목 아래 48~53에서 도서관에 대한 예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부 도서관 및 기록관에서 저작물의 복제〉

48 설명

48A 의회도서관에 의한, 의회의원을 위한 복제

7) The British Library, the Bodleian Library, the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the Library of Trinity College (Dublin), the National Library of Wales, the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8) Copyright Act 1968, No. 63. 2016. 7. 1

- 49 도서관 및 기록관에 의한 저작물 복제와 전송
- 50 도서관 및 기록관에 의한 다른 도서관 및 기록관을 위한 복제
- 51 도서관 및 기록관에서의 미발행저작물 복제
- 51AA 호주국립기록관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
- 51A 보존과 다른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
- 51B 주요 문화기관 장서에 있는 중요 저작물의 보존용 복제물 제작
- 52 도서관 및 기록관에 보존된 미발행저작물의 발행
- 53 기사와 다른 저작물에 수반하는 삽화에 대한 이 절의 적용 범위

호주 저작권법은 영리성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도서관이 영리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운영된다고 취급하지는 않는다(18). 또한 모든 경우에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이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고 일부 조항(49, 50)에서만 장서 전체 혹은 일부를 직접 또는 상호대차를 통하여 공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4.1 이용자 요구에 의한 복제

영국의 저작권법에서처럼 호주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에 있어서 발행저작물(49)과 미발행저작물(51)을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도서관 장서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공중의 구성원이 직접 혹은 상호대차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은 소장된 정기간행물이나 발행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 복제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49(1)). 단, 이용자는 조사

및 연구만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이전에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복제물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서는 이용자가 제출한 요청서가 허위가 아닌 경우에만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49(2)). 그러나 이용자가 거리상 이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신고할 경우에는 서면신청 없이도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49(2A)(b)(iii)). 또한 이용자 요구에 따른 복제는 손상이나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하여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제작된 복제본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도 있다.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에 있어 그 비용을 실비 이상으로 이용자에게 요구할 경우는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49(3)). 또한 정기간행물의 경우 한 호에서 1개의 기사만 복제할 수 있지만 동일한 조사나 수업을 위한 복제물일 경우 2개 이상의 복제물 제공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규정에서와 달리 1인 1부의 요건은 없지만 사서에 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서가 이용자의 복제물 요청이 허위가 아님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정기간행물 이외의 저작물에 대하여 전부 혹은 합리적인 일부분을 초과한 복제물을 요청할 경우 도서관이 합리적 조사를 거쳐 이를 상당한 기간 내에 통상의 가격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49(5)(b)). 한편 호주 저작권법은 '합리적인 일부분'을 저작물의 10%, 한 개 챕터 또는 정기간행물의 기사 1건으로 정하고 있다(2A).

전자형태로 도서관에 입수된 자료는 도서관 건물 내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복제나 공중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49(5A)). 또한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하여 발행저작물의 일부분이나 정기간행물

기사 한편을 전자복제물로 제작하여 신청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데, 이때 도서관은 복제물이 신청자에게 전송된 즉시 그 복제물을 파기해야 한다(49(7A)).

한편 공중에게 개방된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중 저자 사후 50년이 경과한 미발행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첫째, 조사, 연구, 발행 목적을 가진 자가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가 조사, 연구 또는 발행 목적으로 복제를 요청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복제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도서관 직원은 복제물을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셋째, 미발행 학위논문 및 이와 유사한 어문저작물 원고 등도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우 복제물을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전달 및 전송할 수 있다(51).

3.4.2 보존 혹은 그 외의 목적을 위한 복제와 전송

도서관 직원이 보존 등의 목적으로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이다(51A). 첫째는 필사본이나 원본 미술저작물의 보존, 손실이나 악화에 대비하거나, 그 도서관 혹은 다른 도서관이 수행하는 연구를 위해서, 둘째는 발행저작물이 손상 및 악화된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셋째는 발행저작물을 손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이다. 단 이러한 복제는 해당 저작물을 합리적인 시간 안에 통상적인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51A(4)).

보존 목적 이외에 도서관 직원은 행정적인 목적으로도 도서관 장서를 복제할 수 있고 이를 도서관내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다(51A(2)(3)).

여기서 행정적인 목적이란 장서를 관리하거나 돌보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한다.

원본 미술저작물을 복제하여 전송할 수도 있는데, 이는 보존용 복제물을 제작한 이후 해당 원 저작물이 분실되었거나 도서관에 소장된 원본 미술저작물을 전시할 수 없을 정도로 보존상태가 악화되었을 때이다(51A(3A)(3B)). 단, 이용자가 이를 복제물로 제작하거나 전송 또는 하드카피로 복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도서관에서 수행되는 연구를 위해서도 미발행저작물의 복제물을 전송할 수 있다.

3.4.3 도서관 상호간 복제

도서관 직원은 다른 도서관 직원의 복제요청에 따라 도서관 장서 중 정기간행물의 기사나 발행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 복제물을 1부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도서관 장서에 포함시키거나 둘째,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도서관이 그들의 의무수행을 지원하거나 셋째, 이용자 요구에 따라 복제물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정기간행물 이외의 저작물에 대하여 전부 혹은 합리적 일부분이 넘는 복제물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요청 도서관은 합리적 조사를 거쳐 상당한 기간 내에 통상의 시장가격으로 해당 저작물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신청하는 도서관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50(1)~(7)). 이용자 요구에 따라 다른 도서관에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한 연구나 수업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이거나 국회의원의 의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기간행물에서 2개 이상의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50(8)).

다른 도서관에 제공하는 복제물은 복제 대상

이 되는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지 여부, 전자본인지 하드카피본인지에 따라 복제분량과 방법이 다르다. 하드카피로 복제할 경우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저작물은 전체 복제가 가능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정기간행물 기사 1건 혹은 일반 저작물의 합리적 부분만 복제할 수 있다. 전자본 복제물을 제작할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저작물은 전체 복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없다. 단, 국회의원을 위한 복제인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물 전체를 하드카피본과 전자본 복제물로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전자본 복제물은 다른 도서관에 제공된 후에 가능한 빨리 삭제해야 한다(50(7A)(7B)(7C)).

3.4.4 호주국립기록관 관할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

기록관의 직원은 호주국립기록관에 소장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1부의 업무용 복제물, 호주국립기록관 중앙사무소 및 지역사무소에 제공하기 위한 1부의 참고용 복제물, 중앙이나 지역사무소에서 해당 참고용 복제물이 분실 또는 손상되었을 때 1부의 대체용 복제물을 제작하여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참고용 복제물이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호주국립기록관의 중앙사무소나 지역사무소에 제공한 업무용 복제물로부터 제작된 복제물을 말하며, 업무용 복제물이란 호주국립기록관이 참고용 복제물이나 대체용 복제물을 만들기 위하여 해당 복제물을 보유하여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복제물을 말한다. 또한 대체용 복제물이란 참고용 복제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업무용 복제물로부터 제작한

복제물을 말한다(51AA).

3.4.5 중요 문화, 역사 저작물의 보존용 복제 연방이나 주의 자치법에 따른 도서관이나 기록관은 역사적 혹은 문화적으로 호주에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실이나 훼손에 대비하여 보존용으로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필사본의 경우 3부, 원본 미술저작물과 발행저작물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상적인 가격으로 그 저작물의 복제본을 구할 수 없을 경우 3부의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도서관과 기록관은 해당 저작물의 전자본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상적인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51B).

3.4.6 도서관 예외를 위한 일반 규정

2006년 저작권법 개정(Copyright Amendment Act, 2006)시 도서관 예외규정과 별도로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저작물 및 그 외 대상물 이용(Use of works and other subject-matter for certain purposes)” 조항(200AB)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과 유사하지만, 적용대상이 도서관, 기록관, 교육기관과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즉, 다른 예외 규정이 없어야 하고, 특정의 목적을 위한 이용이어야 하고, 비상업적 목적이어야 하며, 그 이용으로 인하여 저작권소유자의 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그 이용이 특별한 경우이어야 한다. 200AB는 포맷전환, 고아저작물이용, 디지털화, 교육목적 지원 등에 적용된다(Simes, 2008).

3.5 미국

미국저작권법⁹⁾ 제1편 108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도서관과 기록관에 의한 복제'의 (a) ~ (i)까지 9개 조에 걸쳐 도서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영국과 호주의 경우와 달리 각 항별 제목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우선 108(a)는 이 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공중의 구성원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거나 특정 기관에 부설되어 있는 경우 그 기관 연구자만이 아니라 관련 연구자나 그 외의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기록관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 의한 복제와 배포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상업적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하고, 복제물에 저작권 표시를 해야 한다.

3.5.1 적용대상 저작물

적용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복제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도서관 소장자료를 보존 및 대체 목적으로 복제할 때 저작물의 범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원고, 사진, 예술품 등 어떤 저작물도 보존용으로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연구용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학술지, 신문, 도서, 기타 문자로 된 저작물로 그 대상이 제한된다. 영화나 기타 시청각자료는 보존이나 대체용으로 복제할 수 있으나, 이용자의 개인적 연구를 위한 복제인 경우 시청각저작물 중 뉴스자료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언론대담을 수록한 DVD는 이용자용 복제의 대상물이지만, 영화 DVD는 그렇지 않다(Crews, 2012, p. 94-95).

음반도 복제될 수 있으나 특정 저작물로 한정된다. 왜냐하면 음악저작물이 제108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음반 복제는 공개된 연설의 녹음물, 도서 녹음물 등의 음반만 대상이다. 또한 그림이나 그래픽 저작물은 도서관 정기간행물에 추가된 삽화, 다이어그램 등으로 출판된 경우에만 복제할 수 있다(108(i)).

3.5.2 이용자 요구에 따른 복제

미국의 저작권법도 이용자 요청에 따른 복제를 일반적인 저작물과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이용자가 요청에 따라 도서관은 그 기관의 장서 또는 다른 도서관의 장서의 적은부분을 1부 복제하거나 선집(collection)이나 정기간행물 한 호에서 1편의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단, 복제물이 신청한 이용자의 소유물이 되어야 하고, 도서관이 개인의 연구, 학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것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도서관은 복제물 접수처에 저작권청장이 규정한 저작권에 관한 경고문을 눈에 띄게 게시하고, 신청서에도 이를 밝혀야 한다(108(d)).

한편, 108(e)에 따르면 도서관이 합리적 조사에 근거하여 해당 저작물이나 음반을 공정한 가격에 취득할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전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단, 이용자가 요청을 해야 하고, 이용자 요구에 따른 복제에서처럼 제공한 복제물이 신청자 소유가 되어야 하며, 경고문도 게시해야 한다. 발행저작물에 대한 일부분 복제이든 취득하기 어려운 저작물에 대한 전체 복제이든 그

9) Circular 92, Title 17 of the United States Code, 2011년 12월

복제방법은 기술중립적이다. 즉, 디지털 형태의 복제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디지털 형태를 포함한 어떠한 포맷으로도 복제물이 제작될 수 있다(Hirtle, Hudson, & Kenyon, 2009).

3.5.3 보존 및 대체용 복제

도서관은 합리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가격에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파손, 훼손, 분실, 도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기존 포맷을 대체하기 위하여 발행저작물이나 음반을 3부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용 복제물을 디지털 형식으로도 복제할 수 있되, 도서관 구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108(c)). 발행저작물의 보존용 복제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반드시 그 도서관의 장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파손 및 도난당한 저작물을 구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빌려서 복제할 수 있다(Gasaway, 2013, p. 196).

도서관은 보존과 안전을 목적으로 또는 다른 도서관에 연구용 납본을 위하여 미발행저작물을 3부까지 복제할 수 있다. 미발행저작물이므로 발행저작물에서처럼 공정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으나 복제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나 음반이 그 도서관이나 기록관에 소장되어 있어야 하며,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될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이 그 형식 이외의 형식으로 배포되어서는 안 되고, 도서관이나 기록관 건물 밖의 이용자에게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108(b)).

3.5.4 도서관 상호간 복제

복제물이나 음반을 수령하는 도서관이 목적

으로나 결과로 볼 때 그 모아진 총량으로 저작물의 구독신청이나 구입을 대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도서관상호협정에 따라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108(g)(2)).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CONTU(The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상호대차를 위한 '5원칙(rule of 5)'을 정하였다. '5원칙'에 따라 도서관은 어떤 학술지의 과거 5년간 발행분에서 5개의 기사를 복제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그 이상의 복제를 요청해야 한다면 도서관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거나 구독을 해야 한다. 이 조항에 앞서 발행저작물과 미발행저작물의 이용자 요청에 따른 복제 규정(108(d)(e))은 이용자의 요청이 이루어졌던 도서관의 장서나 또는 다른 도서관의 장서에서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직접 다른 도서관에 복제물을 요청하지 않고 상호대차규정을 맺은 도서관간에 그러한 요청이 이루어지므로 108(d)와 108(e)는 상호대차를 위한 근거가 되는 규정이기도 하다. 108(g)(2)는 이러한 복제가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Hirtle, Hudson, & Kenyon, 2009).

3.5.5 디지털 복제 및 배포

108(h)에 따르면 발행저작물의 저작물 보호기간 만료 전 20년 동안에는 비영리 교육기관, 도서관, 기록관이 합리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해당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수 없고, 저작권청장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합리적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통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

존, 학문, 연구 목적으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드카피나 디지털 형태로 복제, 배포, 전시, 실연할 수 있다. 즉,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되기까지 20년이 남은 저작물에 대해서 도서관이 디지털화하여 이를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수 있다. 이는 미발행 저작물의 보존용 디지털 복제물 이용에서처럼(108(b)) 도서관 건물 내에서 이용이라는 제한이 없다(Gasaway, 2013, p. 205). 이 규정은 절판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저작물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가고 있는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출판시장에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고, 설령 출판 당시 원본이 있더라도 그 가격이 통상의 가격보다 훨씬 우회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저작물과 다른 조건을 적용하여 도서관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5.6 기타

108(g)(1)에 따르면 도서관이나 기록관은 서로 다른 시기에 상호연관성이 없는 경우라면 동일 자료의 한부 복제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지만 동일 자료를 여러 부 복제하거나 상호연관성을 가진 체계적인 복제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4. 비교분석 및 제언

4.1 비교분석

4.1.1 예외 규정 대상 도서관의 요건

모든 유형의 도서관이 저작권법상 도서관 예

외 규정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이나 학교 등 공적인 교육기관의 도서관과 공중에게 개방된 도서관, 영리목적의 회사에 부설된 도서관으로서 공중에게 서비스하는 도서관, 비영리 주체가 설립한 것으로 도서 등을 보존, 대출, 공개하는 시설이다. 즉,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인 경우 설립주체의 비영리성보다 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우선시 하며, 도서관 이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설립주체의 비영리성도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일본도 공공도서관 등 공중에게 서비스하는 시설과 대학도서관이 그 적용대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학교도서관이 일본의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31조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이 다르다(김종철, 2008).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은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세부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영국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혹은 교육기관의 도서관(43A)으로 한정하고 있고, 각 조항에 따라 “영리목적이 아닌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영리목적이란 도서관 자체의 설립목적과 활동 또는 그 관리주체의 설립목적과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43A). 그런데 도서관내의 지정된 터미널로의 전송(40B) 이외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영리목적이 아닌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 설립주체나 운영이 비영리적이며 공중에게 서비스하는 도서관이 그 대상이다. 호주 저작권법은 영리목적의 설립주체가 소유하고 운영한다고 그 도서관까지 영리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규정(18)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라와 영국 법보다 폭넓게 대상을 정하고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공중에 개방되어 있거나 특정 기관에 부설되어 있는 경우 그 기관 이외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정하고 있을 뿐(108(a)) 그 외의 요건은 없다.

적용대상이 되는 '도서관'이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임을 명시한 경우가 우리나라와 일본이었고, 그 외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법적 요건에 따른 도서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은 아니지만 도서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시행령에 비영리 목적의 기관에서 설립한 것으로 자료를 공중에 공개하는 시설도 포함한다는 추가적 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요컨대 도서관 예외 규정 대상 기관에서 공통된 점은 그 기관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 설립주체

의 성격이나, 법에 따른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나라마다 달랐다.

4.1.2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자용 복제물 제공에 대한 규정은 대상자료, 복제의 양과 부수, 복제할 수 있는 미디어 등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대상이 되는 자료에 대하여 영국을 제외한 4개국은 도서관 장서에 포함된 자료라고 한정짓고 있다. 또한 일본을 제외한 4개국 모두 발행저작물과 미발행저작물 모두를 복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단, 우리나라는 공표권 제한을 통하여 사실상 미공표저작물에 대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는 발행저작물과 미발행저작물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조건하에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발행저작물의 복사분량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부분 또는 합리적 부분,

〈표 1〉 발행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를 위한 복제

	한국 31조1항1호	일본 31조1항1호	영국 42A	호주 49	미국 108(d)
조건	• 조사, 연구 • 이용자요구	• 조사, 연구 • 이용자요구	• 비영리적 조사 • 개인연구 • 서면요청	• 조사, 연구 • 서면요청	• 개인연구, 학문, 조사 • 이용자요구 • 복제물이 이용자의 소유가 될 것, 경고문
대상	• 그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 • 공표도서	• 도서관 장서에 포함된 도서 등 • 공표도서	• 발행 저작물	• 도서관 소장 정기간행물 • 발행 저작물	• 그 도서관/다른 도서관 장서 • 문자저작물, 삽화, 뉴스 / 도서녹음물 등
분량	• 일부분	• 일부분	• 합리적인 부분	• 일부분/전체	• 적은 부분
정기간행물	• 규정없음	• 발행 후 상당기간 경과시 한 호 1건	• 한 호 1건	• 한 호 1건 • 동일 조사, 수업시 2건 이상	• 한 호 1건 • 일부분
부수	• 1부	• 1부	• 1부	• 1부	• 1부
방법	• 디지털형태로 제공 불가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디지털 전송	• 불가	• 불가	• 불가	• 허용	• 불가

적은 부분을 1부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호주 저작권법은 통상의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저작물의 경우 도서관이 합리적 조사를 수행한 후 전체 혹은 합리적 부분을 초과한 복제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1호에 1건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호주는 동일한 연구나 수업과정의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기사 1건 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9(4)).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하는 이유는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개별 기사 1건이 독립된 저작물이므로 '일부분'이라는 요건이 여기에 적용될 경우 개별 기사에 대한 일부분이 되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복제방법에 대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나 일본, 영국, 미국, 호주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디지털 형태로도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이 제공되는 것으로 해석된다(Crews, 2015). 또한 호주는 유일하게 이용자에게 디지털 형태로 일부분 복제물을 전송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호주는 미발행저작물, 미국은 공정한 가격에 취득하기 어려운 저작물에 대해서는 발행저작물과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표 2〉

참조). 즉, 연구 또는 출판을 위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였을 경우 해당 저작물을 전체 혹은 일부분이 넘는 상당량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복제물로의 제작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이용자에게 전송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저작권법이 공표저작물에 대하여 일부분 복제만 허용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 미발행저작물 또는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에 대하여 전체 복제나 일부분 이상의 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도서관의 복제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입는 경제적 피해가 없고, 이용자도 도서관이 아니면 그 저작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4.1.3 자관 및 타관을 위한 보존용 복제

자관 혹은 다른 도서관을 위한 보존이나 대체를 위한 복제의 조건 역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표 3〉 참조). 일본과 우리나라는 자관을 위한 보존용 복제인 경우 보존된 도서이어야 한다는 것과 타관을 위한 복제인 경우 구하기 어려운 자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 조건과 더불어 디지털로 판매되고 있을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고(제31조 4항), 타관용 복제물 제공시 디지털 복제물

〈표 2〉 미발행저작물 또는 구하기 힘든 자료에 대한 이용자용 복제

	영국(43)	호주 (51)	미국 108(e)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발행저작물 • 비영리 조사, 개인연구 • 서면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발행저작물 • 조사, 연구, 출판 • 서면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가격에 취득불가 • 개인학습, 연구, 조사 • 이용자요청
대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발행자료 • 미공중송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자 사후 50년 경과 • 도서관 장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도서관/다른 도서관장서
복제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상당부분
복제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복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복제/전송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복제 가능

〈표 3〉 보존 등을 위한 복제

	한국 31조 1항2~3호, 4항	일본 31조 1항 2~3호	영국 42	호주 51A, 50	미국 108(b), (c)
대상 자료	•도서관 보관자료 •공표자료	•도서관 보관자료 •공표자료	•영구 장서 •발행/미발행물	•도서관장서 •발행/미발행물	•발행 •미발행물(도서관장서)
목적	•자체보존 •타관용	•자체보존 •타관용	•자체보존/대체 •타관용	•자관의 대체용(51A) •타관의 연구용(발행물: 50(1)(a), 미발행물: 51A(1)(a))	•자관의 보존/ 대체(발행물 108(c)), 미발행물 108(b)) •타관의 연구용(미발행 물 108(b))
조건	•자체보존: 디지털로 판매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복제 가능 •타관용: 다른 도서관 요구, 절판 등 구하기 어려운 자료, 디지털 복제 불가	•도서관자료의 보존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관용: 다른 도서관 요구, 절판 등 구하 기 어려운 자료	•관내용 참고 장서 •일반이용자 접근 불가 장서 •타 도서관에만 대 출 가능한 자료 •대체본을 합리적 인 방법으로 구입 할 수 없는 경우	•원고, 원본미술품: 유실, 약 화위험에 대비 보존용, 타도 서관 연구용 제공 •발행물: 손상, 악화, 분실, 도난시 대체용 •합리적 시간 내에 통상적 가 격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 •행정목적으로 도서관 내 전 송가능	•미발행물: 보존용, 타 도서관에 연구용 납본, 3부 복제, 디지털 복제시 관내 이용 •발행물: 파손, 훼손, 분 실, 도난, 포맷대체용, 공정한 가격으로 취득 곤란시, 디지털 복제시 도서관 관내 이용
복제 방법	•타관용은 디지털복제 불가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공은 불가능하다(제31조 1항 3호). 이에 비하여 영국, 호주, 미국은 조건이 다소 복잡하다. 영국은 발행여부는 관계없지만 해당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취득 불가능할 때 자관이나 타관을 위한 복제가 가능하다. 호주는 자관을 위해서는 보존 및 대체용 복제, 타관을 위해서는 도서관의 연구용으로 복제할 수 있는데 다만, 통상적 가격으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이어야 한다. 미국도 발행저작물과 미발행저작물 모두 자관과 타관을 위하여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발행/미발행저작물 모두 3부까지 복제할 수 있으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이들 세 나라의 저작권법은 한국과 일본에 비하여 발행물인가 미발행물인가에 따라 보존 또는 대체 목적의 자관용 복제와 타 도서관을 위한 복제의 요건

이 서로 다르고 자관용이든 타관용이든 보존용 복제는 해당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어떤 자료를 타당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보존용 복제물을 제작하게 한 것으로 이는 실령 도서관의 보존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허용이라고 보인다.

4.1.4 도서관 상호대차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일본의 저작권법에는 상호대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 도서관이 이용자의 요구가 발생하기 전에 디지털화한 자료를 보상금을 지불하고 다른 도서관내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제31조 3항이 상호대차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윤희운, 2010) 일반적으로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복제물을 요

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조항을 상호대차를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정경희, 김규환, 2015). 또한 도서관간 전송에 대하여 발행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제한조건을 둔 것을 보아도 이 규정을 상호대차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영국과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은 다른 도서관의 요청에 따른 복제물 제공에 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다. 영국은 복제물 제작시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전체 혹은 일부분 복제를 허용하고 있고, 호주는 통상의 가격으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에 대한 전체 혹은 일부분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발행자료에 대해서는 일부분, 구하기 어려운 자료에 대해서는 전체 복제도 허용하고 있다. 요컨대, 기본적으로는 이용자를 위한 복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복제물 제공이 원칙이나 시장에서 유통

되지 않아 구하기 힘든 자료는 전체 복제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호주는 전달도서관이 복제물을 다른 도서관에 디지털 전송한 후 바로 삭제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다른 도서관으로 전송도 허용하고 있다(〈표 4〉 참조).

4.1.5 디지털화 관련 규정

도서관이 소장자료를 대량으로 디지털화하기 위한 예외규정 역시 나라마다 다양하였다(〈표 5〉 참조). 호주와 일본을 제외한 4개국은 도서관 예외규정 적용대상인 도서관이 모두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일본은 국립국회도서관에게만 허용된다. 미국은 발행저작물 중 저작권보호기간이 20년 남은 저작물 중 합리적 가격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자료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저작권보호기간과 무관하고 해당 자료가 디지털로 판매되고

〈표 4〉 상호대차

	영국 41	호주 50(1)(b)	미국 108(d),(e),(g)(2)
대상 자료	• 발행물	• 정기간행물 기사, 발행물 • 도서관장서	• 저작물, 음반
정기간행물	• 복제허락권자를 찾지 못한 경우라는 조건 적용 안됨	• 정기간행물은 기사 1건 • 동일 코스의 연구나 조사, 국회의원 지원의 경우 1건 이상	• 규정없음
조건	• 비영리 목적의 도서관 요청 • 복제물 제작시 해당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어야 함 • 디지털복제를 금지하지 않으나 전송에 대한 허용 없음	• 다른 도서관의 요청 • 전부/일부분 초과 복제물 요청시 통상의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자료임을 신청도서관 직원이 선언 • 전송의 방식으로 복제물 전달시 전달도서관은 이를 가능한 빨리 삭제 • 적어도 4년간 요청도서관의 선언자료 모두 보관	• 발행저작물, 구하기 힘든 저작물의 이용자를 위한 복제조건과 동일 • 복제물 총량이 구독/구입 대체하지 않을 정도 • 도서관간상호협정에 따라 복제 및 배포
복제 분량	• 전체 혹은 일부분	1) 하드카피 • 상업적 이용 불가: 전체 복제 가능 • 상업적 이용 가능: 합리적 부분, 정기간행물 기사 한건 2) 전자본 • 상업적 이용 불가: 전체 복제 가능 • 상업적 이용 가능: 복제 불가 3) 국회의원 지원: 상업적 이용가능자료(디지털자료 포함)도 전체 복제 가능	• 발행저작물, 구하기 힘든 저작물의 이용자를 위한 경우와 동일 • 발행물: 1부 일부분 • 구하기 힘든 저작물: 전체, 상당부분
복제 부수	• 1부	• 1부	• 1부

〈표 5〉 디지털화 및 전송

	한국 31(2)~(5)	일본 31(2), (3)	영국 40(B)	호주 200AB	미국 108(h)
대상 자료	•도서관에 보관된 자료 중 디지털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자료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원본	•합법적으로 입수된 자료	•저작물 및 기타	•발행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마지막 20년 동안에 해당하는 저작물
목적	•컴퓨터를 이용한 도서관내 열람, 다른 도서관내 열람	•멸실, 손상, 오손 피한 이용을 위하여	•조사 및 개인연구	•도서관 관리 및 운영	•보존, 학문, 연구 목적
허용 행위	•도서관이 디지털 복제, 전송	•국회도서관이 소장 자료 디지털화 및 타 도서관전송	•도서관이 도서관 건물 내 전용 터미널로 전송	•도서관이 저작물 이용	•도서관이 디지털 복제, 전송
조건	•그 도서관내 이용시 동시 이용자수 제한 •다른 도서관내 열람시 발행 일로부터 5년 경과 •도서관보상금 적용 •관내 전송 후 출력물로 1인 1부 일부분 제공가능	•타도서관 전송자료는 절판자료일 것 •전송된 저작물의 일부분 복제물을 1인에 게 1부 제공가능	•구매, 라이선스 조건 준수할 것	•이용이 특별한 경우,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함, 저작권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함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합리적 가격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있지 않은 한 복제할 수 있다고 하여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폭넓게 허용한다. 영국 역시 합법적으로 입수된 자료를 구매나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디지털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상당량을 디지털화하는 것까지 허용하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한다 (Pedley, 2015, p. 125). 영국은 이 규정보다는 고아저작물에 대한 예외규정을 통하여 도서관에 소장된 고아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화한 자료의 이용범위 또한 다양하다. 제한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디지털화를 허용한 미국의 경우 그 이용범위를 도서관 내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하여 디지털화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를 그다지 엄격히 제한하지 않은 우리나라와 영국의 경우 도서관내로 전송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더불어 동시이용자수라는 제한조건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은 디지털화한 자료를 도서관간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절판자료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고(Sato & Kosaka, 2015), 우리나라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저작물만 허용하되 보상금도 부과하고 있다. 호주는 도서관이나 기록관 등에만 적용되는 공정이용 규정(200AB)을 통하여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와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Simes, 2008),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적용이 어렵고 디지털 환경에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도서관이 보존이나 이용을 위하여 좀 더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Australia Law Reform Committee, 2013).

4.2 제언

4.2.1 미공표저작물 및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에 대한 전체 복제 허용

미공표저작물은 이용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구매하거나 다른 도서관에서 대출하기 힘든 유형의 자료이다. 절판 등의 사유로 합리

적인 가격에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 역시 이용자가 필요시 취득하기 어려운 자료이다.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와 같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전체 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용자를 위한 복제에서 일부분 복제만 허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러한 복제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재산적 이익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함이다. 미공표저작물의 경우에는 그것이 출판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표저작물보다 저작권자에게 재산적 이익에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적다. 절판 등의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에도 이와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검토한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미발행 저작물이나 공정한 가격에 취득하기 어려운 저작물에 대한 복제의 분량을 일반적인 저작물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없고, 도서관에서도 전체를 복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저작물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불법적인 복제를 감행하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에 대한 일부분 복제 규정은 미공표저작물이나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에 대해서는 전체 복제 허용으로 그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4.2.2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의 디지털 전송 허용

본 연구에서 검토한 도서관 예외규정 중에서 이용자를 위한 일부분 복제물 제공 시 이를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디지털로 제작된 복제물을 개별 이용자에게 전송

하도록 허용한 것은 호주가 유일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둘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도서관이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자의 USB 등에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디지털 복제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이용으로 인하여 도서관이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복제물을 요청한 이용자로부터 연구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서약을 제출받는 등의 요건을 두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복제물의 포맷을 제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호주에서처럼 전송한 파일을 즉시 삭제하는 조건으로 도서관이 디지털 복제물을 요청한 이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2.3 정기간행물에 대한 일부분 복제물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1인에게 일부분의 복제물을 제공해주는 규정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4개국은 정기간행물의 경우에 기사 1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기사가 대부분 독립된 저작물이므로 일부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1건의 기사에 대한 일부분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에서는 기사 1건을 일부분 복제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이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 저작물과 별도로 정기간행물에 대한 규정이 도서관 예외규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4.2.4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에 대한 조건

우리나라의 자체보존을 위한 복제 허용의 범

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관대하다. 어떤 경우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이 판매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복제할 수 있다.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에 대한 제한 조건만 있다. 따라서 어떤 자료를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보존용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서관이 보존용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보존용 복제는 통상적인 가격으로 합리적 시간 내에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또 파손이나 훼손, 포맷변경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어떤 경우가 보존용 복제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경우인지에 대한 사례와 더불어 적어도 공정한 가격으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제한 조건이 부가될 필요가 있다.

4.2.5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와 전송 규정 신설
앞서 분석한대로 우리나라와 일본 저작권법에는 상호대차용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비하여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은 다른 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모두 있다. 우리나라는 상호대차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디지털화된 자료의 도서관간 전송 규정을 응용함으로써 도서관보상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도서관과 저작권권리단체간의 협정을 맺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정경희, 김규환, 2015). 그런데 이러한 단체 간 협약은 협약을 맺은 도서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도서관에 대해서 그 협약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서비스이므로 세부적인 사

항은 단체간 협약을 통하여 정하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은 저작권법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4.2.6 디지털화 규정

도서관이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어떤 방법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2000년과 2003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디지털화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심지어 어제 출판한 자료도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점에서 그 대상자료는 최대화하였으되 관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보상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점에서 그 이용은 최소화한 규정이라고 보인다. 디지털화할 수 있는 대상자료를 최대화하였으므로 그 이용범위를 최대한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자료를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2000년 제정 당시에도 이용한게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모바일 환경에 익숙해진 현재의 이용자들에게는 더욱 의미 없는 서비스가 되었다. 보상금이 징수되고 있는 현황이 그 이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정경희, 2015). 이러한 방식보다는 디지털화할 수 있는 대상을 고아저작물로 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고아저작물에 대한 도서관 면책규정의 필요성은 2013년 IFLA에서 WIPO에 제출한 도서관 예외 규정의 중요 항목의 하나로 제안된 바 있다(IFLA, 2013). 요컨대 이용제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화 규정은 영국의 고아저작물 규정이나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저

작물의 디지털화 규정처럼 그 대상은 엄격히 제한하되 이용범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의 내용을 각각 살펴보고 공통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의 한계와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국의 도서관 예외규정에 나타난 공통된 사항은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 보존을 위한 복제,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복제 등이었다.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은 자관 이용자를 위한 것과 다른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구분되었으며 다른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규정이 곧 상호대차용 원문복사였다. 보존을 위한 복제도 자관을 위한 것과 다른 도서관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도서관의 소장자료 디지털화는 도서관 예외 규정 혹은 고아저작물 규정이나 공정이용 규정을 통하여 제시되어 있었다. 위의 공통된 사항을 다루는 구체적인 조건은 각국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특히 발행저작물과 미발행저작물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다른 점, 이용자를 위한 복제에서 미발행저작물 등에 대한 복제분량이 다른 점,

복제의 방식에서 디지털 포맷의 허용과 이를 전달하는 방식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는 점,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물 제공을 위하여 그 근거 규정이 없거나 대상자료가 서로 다른 점,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를 허용함에 있어서도 그 대상자료와 이용범위가 매우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의 경우 미공표저작물 및 구하기 힘든 저작물과 정기간행물의 기사 1건에 대한 전체 복제가 가능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물을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자료로 제한되어야 한다. 넷째,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와 전송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디지털화 관련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국내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은 이미 약 17년 전에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이 규정은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이었을지 모르나 이제는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앞으로의 도서관 기능과 서비스를 고려하여 전면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그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중철 (2008). 도서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저작권 제한 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 제31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윤희운 (2010).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비교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277-301. <https://doi.org/10.4275/kslis.2010.44.4.277>
- 정경희 (2015). 도서관보상금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265-288. <https://doi.org/10.4275/kslis.2015.49.4.265>
- 정경희, 김규환 (2015). 국내 정보서비스 협력체를 통한 원문복사서비스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2(3), 413-432. <https://doi.org/10.3743/kosim.2015.32.3.413>
- 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2013). Copyright and the digital economy: Summary report. Retrieved from https://www.alrc.gov.au/sites/default/files/pdfs/publications/summary_report_alrc_122.pdf
- Brown, A. M. (2013). Copyright exceptions for libraries in the digital age: U.S. Copyright Office considers reform of section 108, highlights of the symposium.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74(4), 199-214.
- CILIP (2014). Changes to UK copyright law. Retrieved from <http://www.cilip.org.uk/cilip/advocacy-campaigns-awards/advocacy-campaigns/copyright/changes-uk-copyright-law-update?gclid=CPOGoNbZmNACFdgIvQodrJIPZQ>
- Cornish, G. P. (2015). Reform of UK copyright law and its benefits for libraries.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43(1), 14-17. <https://doi.org/10.1108/ilds-11-2014-0054>
- Crews, K. D. (2008, November). Study on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libraries and archive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7th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Geneva. Retrieved from http://www.wipo.int/edocs/mdocs/copyright/en/sccr_17/sccr_17_2.pdf
- Crews, K. D. (2012). Copyright law for librarians and educators: Creative strategies & practical solutions. 3rd ed. Chicago: ALA.
- Crews, K. D. (2015, June). Study on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libraries and archives: Updated and revised.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30th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Geneva. Retrieved from

- http://www.wipo.int/edocs/mdocs/copyright/en/sccr_30/sccr_30_3.pdf
- Gasaway, L. N. (2013). Copyright questions and answers for information professionals: From the columns of against the grain. Indiana: Purdue University Press.
- Hirtle, P. B., Hudson, E., & Kenyon, A. T. (2009). Copyright & cultural institutions: Guidelines for digitization for U.S. libraries, archives & museum. New York: Cornell University Library.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4). Exceptions to copyright: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75956/Libraries_Archives_and_Museums.pdf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13). Treaty proposal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libraries and archives. Retrieved from http://www.eifl.net/system/files/resources/201408/tlib_v4_4_december_2013.pdf
- Pedley, P. (2015). Practical copyright for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London: Facet Publishing.
- Sato, Y., & Kosaka, M. (2015). Digitized contents transmission service for libraries on Japan. Paper presented at IFLA WLIC 2015, Cape Town. Retrieved from <http://library.ifla.org/1244/1/102-sato-en.pdf>
- Simes, L. (2008). A user's guide to the flexible dealing provision for librarie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cultural institutions. Retrieved from <http://digital.org.au/sites/digital.org.au/files/documents/Flexible%20Dealing%20Handbook%20final.pdf>
- The Section 108 Study Group (2008, March). The Section 108 Study Group report. Retrieved from <http://www.section108.gov/docs/Sec108StudyGroupReport.pdf>

[관련법률]

저작권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32호, 2016.12.20. 일부개정]

著作権法 [2016.11 更新] 2015.6.24. 법률 제46호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48

The Copyright and Rights in Performances (Research, Education, Libraries and Archives) Regulations 2014 No.1372

The Copyright and Rights in Performances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Regulations 2014 No. 2861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and Related Laws Contained in Title 17 of the United States Code 2011

Copyright Act 1968 No. 63(Compilation No. 51, Compilation date: 1 July 2016)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Joung, Kyounghee (2015). An analysis on the results of the operation for library remuner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4), 265-288. <https://doi.org/10.4275/kslis.2015.49.4.265>

Joung, Kyounghee, & Kim, Kyuhwan (2015). A study on the current issues and improvements for document delivery services based on the information service networks: Focus on copyright issu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3), 413-432. <https://doi.org/10.3743/kosim.2015.32.3.413>

Kim, Jong Chul (2008).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copyright limitation for library in korea: Focusing on the article 31 of the copyright law.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Yoon, Hee-Yoon (2010). A comparative analysis on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in major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4), 277-301. <https://doi.org/10.4275/kslis.2010.44.4.277>

